

● 공정위, 동반성장과 민생안정에 주력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계획 등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의 큰 화두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감시 △ 다양한 업종에서의 경쟁 촉진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등에 힘쓰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중기조합을 통해 서면으로 단기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기조정협의가 불가능할 때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요구를 의무화하고, 일방적 현장실사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모든 업종에 대해 1단계 수급사업자 위주로 조사했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업종별로 순환 실시하되 해당업종에 대해 2~3단계 수급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민생관련 품목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T프라이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생필품 가격정보도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가격거품 논란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경쟁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조업체, 전자상거래, 다단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 조사,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0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외연 확장 위한 M&A 활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대폭 늘어나고, 비계열사 인수를 통한 사업 외연 확장이 활발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전자·화학 등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은 총 211건으로, 2009년 153건 대비 약 37.9% 증가해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분야는 2009년 260건 대비 10.8% 증가에 그쳤다. 특히,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에 있어서 결합금액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 7건 중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3.5조원), 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2.6조 원), 산업은행-대우건설(1.2조원) 등 5건이 제조업 분야에서 성사됐다.

기업결합의 내용 측면에서는 사업외연 확장을 위한 비계열사간 결합비중이 68.8%에서 72.1%로 증가했는데, 2010년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499건이며 이 중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360건으로 전체 대비 72.1%를 차지했다.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외국회사간 기업결합 제외)에 한정하더라도 비계열사간 결합비중은 전년도 67.5%에서 70.1%로 증가했다.

2010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499건이었으며,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는 2009년 413건에서 499건으로 21% 증가했으며,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에 한정할 경우는 383건에서 446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침체가 2009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이 M&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결합금액은 약 215조 원으로 2009년 150조원에 비해 43% 증가했지만, 이 중 국내기업 관련 결합의 결합금액은 31조 원에 불과해 2009년 29조 원에 비해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외국 기업간 결합의 결합금액은 184조원으로 2009년 121조 원에 비해 51%나 증가했는데, 특히 상위 10대 외국기업간 결합의 결합금액은 166조에 달했다. 이는 외국에 비해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올해는 현대건설 매각건과 외환은행 매각건 등 국내기업들의 대형 M&A가 일부 예상되고 있어 결합금액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245건, 49.0%), 수평결합(172건, 34.5%), 수직결합(82건, 16.5%)의 순으로 많았다. 2008년부터 혼합결합의 비중은 62.7%, 2009년 53.3%, 2010년 49.0%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수평결합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후방 기업과의 수직결합 비중은 2008년 10.3%, 2009년 11.6%, 2010년 16.5%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보다는 원료 공급선 또는 판매·유통망 확보 등 핵심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업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적발에 총 26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미국 및 EU 경쟁당국과의 공조로 4개국 5개 브라운관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이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해 총 2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브라운관 업체는 삼성 에스디아이와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한국), 중화 굑저우 투브스 리미티드(대만), 중화 광저우 투브스(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등 5개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운관 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과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최소한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격 합의는 제품구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해 진행됐다. 특히,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는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했다는 것.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 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 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생산라인 폐쇄 여부 점검을 위해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사전 고지 없이 프리패스(Free Pass)로 공장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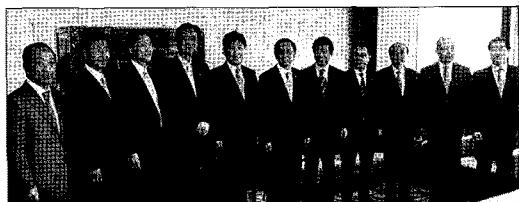
또한 5개 브라운관 업체는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 제한과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 브라운관 업체의 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 4개사에 총 26,27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2009년 6월 8일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됐다.

● 공정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CEO와 간담회 개최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문화 확산 공감대 형성



장, 현대백화점 하명호 사장, 신세계 박건현 사장, 한화갤러리아 황용기 사장, AK플라자 서광준 사장, 이마트 최병렬 사장, 홈플러스그룹 이승한 회장,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 하나로마트 이강을 농협중앙회 유통총괄 임원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 대형 유통업체의 업태(백화점·대형마트 등)·상품군별 판매수수료 공개 △ 동반성장협약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내실 있는 운영 △ 협력 납품업체와의 해외 동반진출 당부 등 유통업계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공개계획도 밝히는 한편, 동반성장협약 및 CP 우수 평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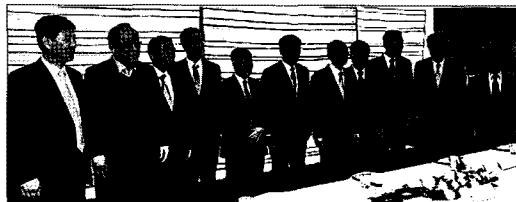
이에 유통업체 CEO들은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100% 현금 결제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동반진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라서는 올해 윤리경영의 테마를 동반성장으로 설정하고, CEO로부터 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문화와 인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승진 등에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 CEO들은 유통 분야의 동반성장은 법·제도를 통해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확산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통 분야가 앞장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동반성장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건의했다.

김동수 위원장도 동반성장문화 확산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유통업체 CEO들이 이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유통 분야가 동반성장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모델의 공유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공정위와 유통업계는 향후에도 동반성장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례적으로 간담회나 동반성장협의체를 개최하고 동반성장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판매수수료 공개문제와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관련해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도 있었다.

● 공정위원장, 주요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 개최

현금결제 확대 등 동반성장 위한 노력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과 10개 대형 건설사 CEO가 2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정책방향과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추진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전통적인 하도급거래 산업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건설업계가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위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 실태파악 및 보완책 마련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및 입찰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현금결제 확대 등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사 CEO들도 협력업체들에게 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과 신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 등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를 준수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 결과, 건설사 CEO들과 김 위원장은 △ 기업들의 인사·보수 등 임직원 성과 평가시 '공정거래 준수 여부' 와 '동반성장 노력' 이 반영되도록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데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하는 한편,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현금이 2·3차 협력사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 △ '동반성장협의체' 등을 통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모범사례를 업계 전반에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동반성장에 대해 계속 논의 △ 협력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앞장서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협약' 을 체결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기업도 상당수에 이른다.

● 공정위원장, 15대 대기업 CEO들과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2·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문화 확산되도록 대기업이 가교역할 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2월 1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15대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기업 CEO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주화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에스케이 김영태 대표이사 사장, 엘지전자 남영우 사장, 롯데쇼핑 채정병 사장, 포스코 박한용 경영지원부문장, 지에스칼텍스 나완배 대표이사 사장,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이사 사장, 금호산업 기옥 대표이사 사장, 대한항공 지창훈 대표이사 사장, 케이티 석호의 부회장,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대표이사 사장, 한화 남영선 대표이사 사장, STX조선해양 홍경진 대표이사 부회장, 엘에스전선 손종호 대표이사 사장 등 15대 대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공정위의 대책인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뿐 아니라 의식과 행태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 문화 자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기업 CEO들은 협력업체들에게 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과 신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경영 지원을 실천하는 등 각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과 동반성장문화가 2차·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대기업이 가교역할을 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결과, 15대 대기업 CEO들과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문화가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가교 역할 △기업들의 인사·보수 등 임직원 성과평가시 ‘공정거래준수 여부’와 ‘동반성장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시스템 개선 △‘동반성장협의체’,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해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 등 모범사례를 업계 전반에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동반성장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것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15대 대기업 CEO들이 앞장서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개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352개 선정

하도급업체 자금 부담 덜어주는 현금성결제 100% 업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개 및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352개를 선정, 발표했다. 201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15개 업체로는 (주)영이건설, (주)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주), 영진종합건설(주), 백송건설(주), (주)대명건설, (주)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주), 우신종합건설(주), 후토산업개발(주), 대웅건설(주), (주)삼양사, 대도종합건설(주), (주)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주)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 1월부터 선정 시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부터 선정 시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352개 업체도 2010년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현금성결제 모범(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고, 상호협력평가의 점수는 조달청 및 지자체의 적격심사 점수와 연결되어 2009년 대비 건설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모범업체 신청업체 중 11개 업체가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우수업체 신청업체 중 38개 업체가 어음결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적격 업체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모범업체와 15개 우수업체 352개가 선정됐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누산별점 산정시 별점 감경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는 우수업체의 인센티브 이외에도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통보해 부처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OECD, M&A · 카르텔 · 산업규제 관련 최신 경쟁법 주제 논의

공정위 대표단, OECD 경쟁법 · 정책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 · 정책회의'에 참석해 M&A 심사 · 카르텔 조사 · 산업규제와 관련된 경쟁정책의 최신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2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경쟁법 경험이 부족한 비회원 개발도상국을 초청해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 (Global Forum on Competition)도 개최됐다.

이번 정책회의의 주제별 세부 논의내용으로는 먼저 'M&A 심사와 경제분석'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M&A 심사과정에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분석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측정 등 다양한 계량 분석기법의 적용 사례 및 분석시 고려사항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경쟁제한 피해에 대한 계량분석'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각종 분석기법의 내용 및 도입 · 적용방안을 논의했는데,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산업별 분석과정에서 피해규모를 계량분석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그리고 '규제산업에의 경쟁법 적용'은 정부규제를 이유로 경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주장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장의 배경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규제를 근거로 경쟁 제한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법집행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경쟁법 집행경험이 부족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최된 글로벌 경쟁포럼은, 특히 개도국이 경쟁법 집행시 어려움을 느끼는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다국적 M&A'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나라 경쟁법 집행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불황 카르텔'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불황시 카르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및 한계를 검토하고 각국의 법집행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제한 피해에 대한 계량분석'과 'M&A 심사와 경제분석' 등 선진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주제가 많아, 해당 논의내용을 검토 · 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사업자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단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예규·고시 등에 대한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해 643건을 개선(개선 이행률 65.9%)했고 333건은 개선 추진 중이다.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 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했고, 다음은 '진입 제한'이 199건(30.9%)으로 많았으며, 이 두개의 규제유형이 전체 개선실적의 82.3%를 차지했다.

가격제한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23 건에서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등 199건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해 허가권자(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등 330건에서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제고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등 55건에서는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시 관내 사업자와의 공동도급비율 제고 및 관할구역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개선된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개사 선정

동반성장지수안 확정·발표·전기·전자, 기계·플랜트 등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 공식 발족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6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의 협력 중소기업 및 수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수개발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기술 탈취,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고질적 관행 시정에 중점을 뒀고,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또한, 2차 협력사 및 수요 중소기업을 ‘체감도 평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동반성장의 외연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 긴 샌드위치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2차) 및 수요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햄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도급계약서 등 도입 여부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 지급, 기술 지원, 교육훈련 등)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 불공정거래 경험 (구두발주, 부당 감액, 기술 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	2. 협력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 공식협의기구, 보복 금지 등 추진체계 •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 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 업종 참여 여부 • 적합 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기·전자 등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6개 대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군	평가대상 대기업
전기·전자 (11)	삼성전자, LG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윈, 대한전선, LG이노텍
기계·자동차·조선 (15)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화학·비금속·금속 (10)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S-OIL, LG화학, 현대제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엘에스니꼬동제련, 삼성코닝정밀소재
건설 (12)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건설부문),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도·소매 (3)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스코
통신·정보서비스 (5)	케이티,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한편, 이날 3차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철강·금속, 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건설,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유통,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과 공공부문(공기업)을 포함한 12개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관련 업종의 대·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별 실무위는 앞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업종별 동반성장 이슈 논의, 정책 건의 과제 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학원·TV홈쇼핑 분야 부당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위촉 및 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해 지원자들의 경력, 모니터요원들의 지역적 분포관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2010년에도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해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킨 바 있는데, 지난해의 소비자모니터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올해에는 모니터링 대상에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원업과 여행업을 새롭게 추가한 것.

특히 학원업의 경우는 학생들의 입시실적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요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방법과 증거수집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고, 표시광고법 등의 내용에 관해 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 모니터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학원,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제보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 모니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기업과 함께 하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 추진

전세계적인 카르텔 제재 강화 추세 속에서 예방교육 수요 4배 이상 급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EU를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기업들은 지금까지 외국 당국으로부터 2조3,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미국은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카르텔 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EU는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EU 의회에서 천명한바 있다.

일본은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에 소극적이었지만 2010년도부터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극 처리할 것을 천명했으며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 60여개 국가가 국제카르텔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공정위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요청이 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의 산업별 집합교육에서 각 기업(집단)별 교육 지원과 더불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공과 해외 현지설명회의 지속적인 개최 및 개최도시 다변화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기업(집단)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직접 찾아가는 (국제)카르텔 교육 서비스를 제공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2개 기업집단, 24개 과정, 약 2,400명 임직원 대상)
△ 국내기업과 함께 TF를 구성해 동영상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 △ 기업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해외 현지설명회의 개최 도시를 다변화해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카르텔 제재 가능성성이 높은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설명회를 추진하지만, 현지 진출기업이 많은 도시로 4월에는 영국 런던, 7월에는 미국 뉴욕, 10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말 우리기업을 포함해 LCD 국제카르텔 사건을 강력하게 제재해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EU 지역(런던)에서 4월경 우선 추진하는 한편, 현지설명회 개최시 현지 경쟁당국과의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축소 등 기업 부담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그 동안 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1명이라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임원총수의 1/3 미만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그 밖에 단순투자,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의 기업결합(주식 취득, 회사 설립, 임원 겸임)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축소했다.

그리고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의 한시적 예외사유로 했으며, 예외인정기간은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3개의 공시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정비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공정거래 분쟁에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는 분쟁 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했으며,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 등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011년 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1월보다 10개사 증가한 1360개

2011년 2월 1일 현재, 5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360개로 지난달 1,350개에 비해 편입 33개, 제외 23개 등 10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우건설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 소속 케이디비밸류제6호사무투자전문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주)대우건설을 포함해 소속회사 11개사가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 제외됐다.

< 2011년 1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1. 3.	편 입				제 외							증감 2011. 2.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1개)	1,350	20	10	3	33	4	2	4	-	-	13	23	8	1,360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8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33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삼성 : 에스엔풀㈜ / 에스케이 : 내트럭프랜즈㈜} 등 20개 △ 지분 취득 {엘지 : 해태음료㈜ / 롯데 : 파스퇴르유업㈜} 등 10개 △ 기타(현대중공업 : 하이골드오션2호선박투자회사) 등 3개였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10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23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삼성 : 삼성광주전자㈜ / 롯데 : ㈜롯데시티호텔} 등 4개 △ 지분 매각 {현대자동차 : 아이아㈜ / 씨제이 : ㈜챔프비전} 등 2개 △ 청산 종결 {엘지 : ㈜탐스미디어 / 효성 : 효성건설㈜} 등 4개 △ 기타 {금호아시아나 : ㈜대우건설} 등 13개였다.

● 2011년 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월보다 4개사 증가한 1364개

2011년 3월 2일 현재, 5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364개로 지난달 1,360개에 비해 편입 10개, 제외 6개 등 4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2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2. 1.	편 입				제 외						증감	2011 3.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1개)	1,360	5	4	1	10	1	1	2	-	-	2	6	4	1,364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7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총 10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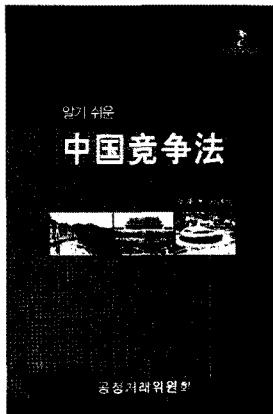
△ 회사 설립 5개 {에스케이 : 에프투텔레콤(주), (주)산타테크 등} △ 지분 취득 4개 {케이티 : (주)넥스
알, 에스티엑스 : (주)혁신기업 등} △ 기타 1개 {동양 : 금진바이오테크(주)} 였다.

제외내역으로는 6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6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1개 {에스케이 : 에스케이엔제이씨(주)} △ 지분 매각 1개 {엘지 : (주)더블유브랜드커넥
션} △ 청산 종결 2개 {씨제이 : (주)아플레이온 등} △ 기타 2개 {현대증공업 : 하이골드오션2호선
박투자회사 등} 이다.

●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발간

공정위, 중국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해소 위해 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中国竞争法)>을 발간했다.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은 중국의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가격독점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카르텔, 가격독점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공포된 「반가격독점규정」(反价格垄断規定) 등 관련 법규 총 35종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심결사례를 모두 반영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책의 저자인 공정위 박제현 과장(중국인민대학 법학박사)은 “국내 최초의 중국 경쟁법 소개서인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향후 중국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중국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은 한정 수량 발행되어 지난 2월부터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현지의 우리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한편, 국내에서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보문고와 인터넷교보문고 www.kyobobook.co.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공정위 인사동향 (2011. 1. 17. ~ 3. 9.)

2011. 1. 17.

▶ 최미강

일반계약직공무원 제5호에 임함.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근무를 명함.

19.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박경숙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21.

▶ 나양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에 임함
(2011.1.21.~2014.1.20.).

26.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서기관 장혜림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행정사무관 장영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서기관 박종배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심주은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서기관 이병건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이승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 김오식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근무를 명함.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손계준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태균

위원장실 근무를 명함.

▶ 위원장실 행정사무관 전영재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28.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김선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보함.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사무관 이용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에 보함.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행정사무관 신현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에 보함.

27.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덕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 장기교육 훈련을 위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파견을 명함(파견기간:2011.2.7.~2012.2.6.).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석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 장기교육 훈련을 위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을 명함(파견기간:2011.2.15.~2012.2.14.).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서남교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 장기교육 훈련을 위한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파견을 명함(파견기간:2011.2.8.~2012.2.7.).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강신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 장기교육 훈련을 위한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파견을 명함(파견기간:2011.2.18.~2012.2.17.).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성인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행정주사 김우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2.7.~별도발령시까지).

8.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재웅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4.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이달영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종합상담과 행정사무관 박주한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서기관 류필호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행정주사보 김양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2.10.~별도발령시까지).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안남신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2.10.~별도발령시까지).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김학무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백승영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

한성호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2.10.~별도발령시까지).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노현재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2.10.~별도발령시까지).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문창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주사
김진용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주사
조현두

기획재정부 전출을 명함.

▶ 기획재정부 행정주사 이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위원장실 6급 상당 김중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김중현

기능8급(운전원)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10급(운전원)

김영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김영걸

6급 상당에 임함. 위원장실 근무를 명함.

18.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김준범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소비자정책국장에 보함. 대통령.

-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사무관 정보를 서기관에 임함.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사무관 황윤환 서기관에 임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공현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남형우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행정주사 최원철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신희욱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2.18.~별도발령시까지).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장미선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2.25.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강수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2.28.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조재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2011.3.1.~2012.8.31.).

3.7.

-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배진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에 보함.

3.9.

- ▶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치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통령.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서기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대통령실 부이사관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에 보함.

